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영일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

2. 조치일 : 2023. 7. 28.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개선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한 제도 개선

(가) 회사 내규인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제도 규정” 상의 보호감시인 자격 요건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과 일치하지 않아 결격사유 있는 자가 보호감시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고,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등 다른 내규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므로 「대부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보호감시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교육, 민원점검 등을 통해 나타난 미비사항 개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동일 유형 민원이 반복 접수되는 등 보호감시인 제도 운영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대상·시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보호감시인의 권한 및 책임 강화를 통해 대부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